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근절 지지 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3.02.10

1. 목적

- 1.1 본 문서는 효성(이하 '회사')이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을 둔다.
- 1.2 본 정책은 효성그룹 인권경영 정책의 부속서로 적용하며, 회사는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 OECD가이드라인,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근무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용어의 정의

- 2.1 ‘강제노역’이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및 서비스를 말한다.
- 2.2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 합당한 대가없이 노동력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선 성매매 강요 등을 통해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2.3 상기 외 용어의 정의는 효성그룹 인권경영 정책에 기재된 정의를 따른다.

3. 적용범위

- 3.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3.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3.3 다만,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일반원칙

- 4.1 회사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의 금지를 정한 세계인권선언 제 4조를 존중한다.
- 4.2 회사는 전 사업장의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지 않는다.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근절 지지 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3.02.10

4.3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한다. 아울러 회사는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4.4 회사는 공급업체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업체가 인신매매, 아동노동 또는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며, 평가 및 실사 등을 통해 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의 종료 등을 적극 검토한다.

4.5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끝.